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인력 및 설비 현황	전담조직 부서명		
	전담인력 명		시설면적 ㎡
신청 내용	[] 사업 전부 지정		
	[] 사업 일부 지정	[]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